

성남 도시관리계획(판교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
성남 도시관리계획(판교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4. 03. 11.

성 남 시 장

- 판교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사항만 기재)
-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
- 가. 건축물에 대한 용도 및 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- 4) 공동주택용지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	비고
A1-1~ A27-1, B1-1~ B6-1	A1-1~ A27-1, B1-1~ B6-1	형태 및 외관	• 담장, 계단, 피로티 - 담장의 높이는 1.2미터 이하로 하며, 재료는 화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. - (이하 생략)	기정
A1-1~ A27-1, B1-1~ B6-1	A1-1~ A27-1, B1-1~ B6-1	형태 및 외관	• 담장, 계단, 피로티 - 담장의 높이는 1.5미터 이하로 하며, 재료는 화목류의 생울타리로 하거나 50% 이상 투시형 담장으로 한다. - (이하 생략)	변경

○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

- 제 II 편(건축부문 시행지침) 제2장 공동주택용지 제22조(담장, 계단 등)

구 분	계획내용
제22조 (기정)	① 담장의 높이는 1.2미터 이하로 한다. ② 담장 재료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.(단 지반지형 여건상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별도의 재료를 허용한다.) (이하 생략)
제22조 (변경)	① 담장의 높이는 1.5미터 이하로 한다. ② 담장 재료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하거나 50% 이상 투시형 담장으로 한다. (이하 생략)

□ 관련도서: 게재생략(열람장소 - 성남시청 도시계획과)